

1월9일 국회통과, 2월4일 공포, 8월5일 시행예정

## 데이터3법 개정 다가올 개인정보 보호법제 변화

### ② 신용정보법 국가법령 정보센터 원문 보기

개정내용  
주목할점

**가명정보** 가명정보 처리관련 규정 위반시  
보호의무: 형사처벌, 과태료, 과징금 부과

**과징금** 특정 개인을 알아보기 위한 목적으로 정보처리시  
확대: <관련 매출액> 3%이하 과징금에서  
**<전체 매출액> 3% 이하 과징금으로 확대**

**손해배상** 개인신용정보 누설 등으로 신용정보주체에 피해를 입힌 경우  
범위확대: 손해배상 범위를 기존 3배에서 <5배>로 확대

### 1. 조직/체제 변화

법체계 변화	일반법 <개인정보보호법>과 특별법<신용정보법> 개인정보 관련규정 정합성 일치화
감독기관 변화	금융기관은 <금융위원회>가 감독 금융기관을 제외한 신용정보법적용 기관의 '자료제출요구, 검사권, 출입권, 시정명령, 과징금 및 과태료 부과 등' 업무는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수행
전문기관 변화	정보집합물 결합, 처리를 수행하는 금융위원회 지정 <데이터 전문기관> 신설

### 2. 데이터 활용범위 확대

1) 세가지 목적인 경우 동의없이 가명정보 처리 및 제3자 제공 가능

- 상업적 시장조사 등 통계작성
- 산업적 연구
- 공익적 기록보존 등 신 제32조 6항


\* 개인정보보호법의 경우  
<통계작성>, <과학적 연구>, <공익적 기록보존>  
목적에 한하여 동의없이 가명정보 처리 가능 개인정보보호법 제28조의2  
- 개인정보보호법 제2조 8호. "과학적 연구"란  
기술개발, 실증, 기초연구, 응용연구 및 민간 투자연구 등을 말한다

2) 익명정보 개념 및 추정규정 도입

"익명처리"란 더 이상 특정 개인인 신용정보주체를  
알아볼 수 없도록 개인신용정보를 처리하는 것  
신 제32조 6항

금융위원회가 심사하여  
적정하게 익명처리가 이루어졌다고 인정한 경우  
더 이상 해당 개인인 신용정보주체를 알아볼 수 없는 정보로 추정함  
신 제40조의2 4항

### 3. 가명처리/익명처리된 정보의 관리조치 명시

구분	신용정보법	개인정보보호법
<p>분리보관</p>	<div style="text-align: center;">  <p>가명처리된 정보와 원 상태로 복원하기 위한 추가정보는 &lt;각 대통령령&gt;이 정한 방법으로 분리 보관 또는 삭제</p> </div>	
<p>내부계획수립</p>	<p>제3자의 불법적인 접근, 정보 변경/훼손/파괴를 막기위해 신용정보법 대통령령에 따라 1) 내부관리계획 수립 2) 접속기록보관</p>	<p>해당 정보가 분실/도난/유출/위조/변조 또는 훼손되지 않도록 대통령령에 따라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조치 구축</p>
<p>익명정보 검증기관 검토</p>	<p>익명처리가 적절하게 이루어졌는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lt;금융위원회&gt;에 심사요청 가능 → &lt;금융위원회&gt;를 통해 인정받은 경우 해당 정보는 익명정보로 추정</p>	<p>관련 조항 없음</p>
<p>파기</p>	<p>가명정보 이용 중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있게 된 경우 즉시 처리중지, 정보삭제</p>	<p>가명정보 처리 과정에서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있는 정보가 생성된 경우 해당정보 처리중지, 지체없이 회수/파기</p>
<p>가명정보 처리기록 보관</p>	<p>개인신용정보를 가명처리나 익명처리를 한 경우 조치 기록을 3년간 보존</p>	<p>가명정보 처리시 가명정보 처리목적, 3자 제공시 제공받는 자의 정보를 보관할 것을 명시</p>

신용정보법 제40조의2, 개인정보보호법 제28조의2

#### 4. 금융위원회 지정, 신용정보의 결합을 위한 데이터 전문기관 역할 명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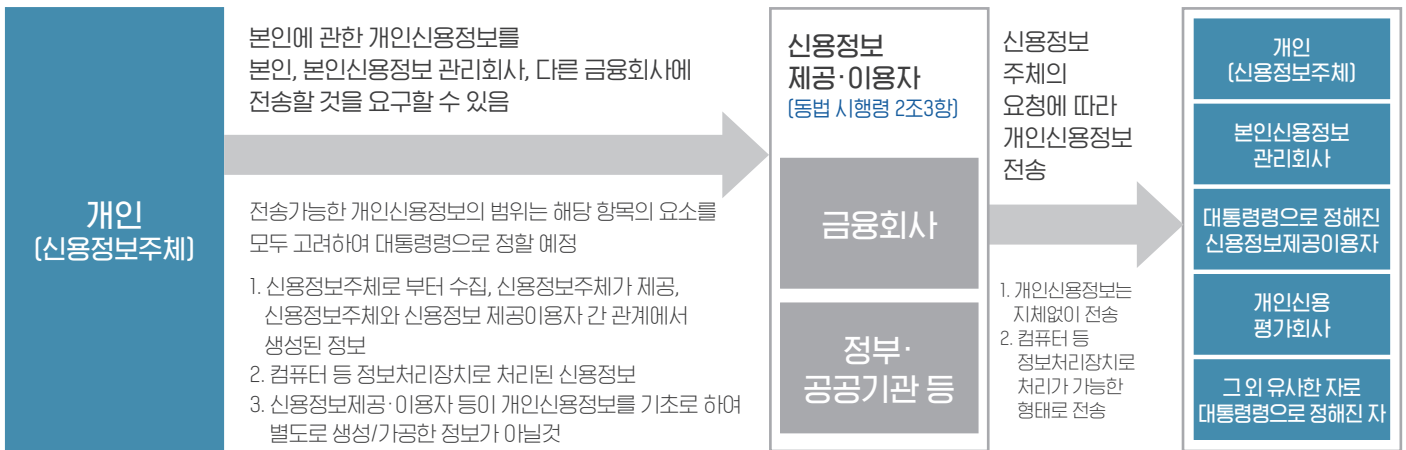


신용정보회사에서 자신이 보유한 정보집합물을 제3자가 보유한 정보집합물과 결합하려는 경우 <데이터 전문기관>을 통해서만 결합 진행
<데이터 전문기관>은 해당 신용정보회사, 제3자에게 전달할 경우 <가명/익명처리>가 된 정보만을 전달해야 함
익명정보는 사전에 <데이터 전문기관>의 적정성 평가를 받아 법적 안정성이 확보될 것으로 전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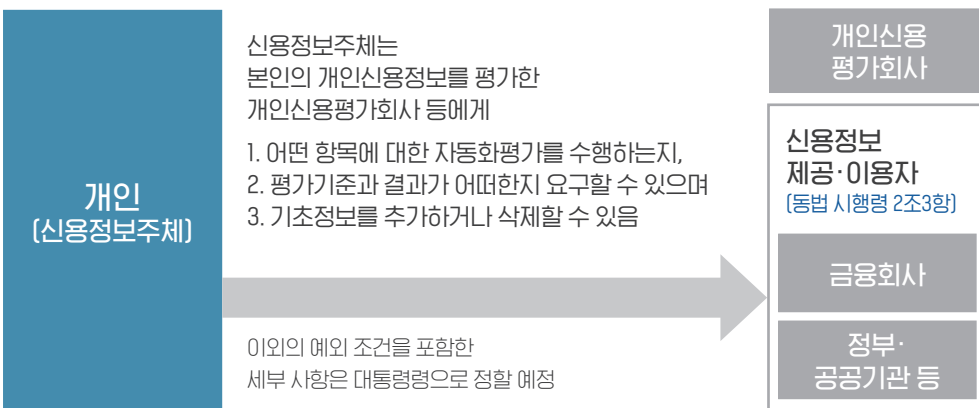
신용정보법  
제17조의2,  
제26조의4

#### 5. 개인정보 전송요구/자동화 평가결과 이의제기 권리 도입 (EU GDPR 차용)

##### <개인신용정보 전송요구권> 33조의2



##### <자동화 평가 결과에 대한 설명 및 이의제기> 36조의2



## 6. 신용정보법 -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안 비교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안 리포트 다시보기

항목		신용정보법	개인정보보호법
법 성격		특별법	일반법 * 다른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개인정보보호법을 따름
적용대상		신용정보를 제공받아 영업에 이용하는 '신용정보 제공·이용자' ex: 은행, 채신관서, 저축은행중앙회 등	업무목적으로 개인정보 파일을 운용하기 위해 다른사람의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공공기관, 법인, 단체 및 개인
감독기관		금융위원회 (금융기관을 제외한 신용정보법 적용기관은)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가명정보 개념		추가정보를 사용하지 않고는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도록 처리하는 것	개인정보의 일부를 삭제하거나 전부를 대체하는 방법으로 추가정보 없이는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도록' 처리하는 것
가명정보 활용 가능 목적		· 상업적 시장조사 등 통계작성 · 산업적 연구 · 공익적 기록보존 등	· 통계작성 · 과학적 연구 · 공익적 기록보존
가명 정보 관리 조치	분리보관	가명처리된 정보와 원 상태로 복원하기 위한 추가정보는 <각 대통령령>이 정한 방법으로 분리 보관 또는 삭제 (신 40조의2 1항, 개 28조의4 1항)	
	내부계획 수립	제3자의 불법적인 접근, 정보 변경/훼손/파괴를 막기 위해 내부관리계획 수립 및 접속기록 보관 (신 40조의2 2항)	해당 정보가 분실/도난/유출/위조/변조 또는 훼손되지 않도록 기술적·관리적·물리적 조치구축 (개 28조의4 1항)
	검증기관 검토	익명처리가 적절하게 이루어졌는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금융위원회>에 심사요청 가능 (신 40조의2 3항)	관련 내용 없음
	보관	개인신용정보를 가명처리나 익명처리를 한 경우 조치 기록을 3년간 보존 (신40조의2 8항)	가명정보 처리시 가명정보 처리목적, 3자 제공시 제공받는 자의 정보 등을 보관할 것을 명시 (개 28조의4 2항)
위반시 처벌	정보 유출	보안대책을 수립하지 않아 정보를 분실, 도난, 누출, 변조, 훼손 당한 경우 → <b>전체 매출액 3% 이하 과징금</b> (신 40조의2 6항, 42조의2 1항 1의4호, 42조의2 2항)	안전성 확보 조치를 하지 않아 복원을 하기 위한 추가 정보가 분실, 도난, 유출, 위조, 변조 또는 훼손된 경우 → 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 (개 28조의4 1항, 73조 1호)
	가명 정보의 재식별	정보처리자가 영리 또는 부정한 목적으로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있게 가명정보를 처리한 경우 → <b>전체 매출액 3% 이하 과징금</b> ,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 (신 40조의2 6항, 42조의2 1항 1의4호, 42조의2 2항)	특정 개인을 알아보기 위한 목적으로 가명 정보나 정보집합물을 처리한 경우 → <b>4억원 이하 또는 전체 매출액 3% 이하 과징금</b> ,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 (개 28조의5, 28조6)
			영리 또는 부정한 목적으로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있게 처리한 가명정보를 제공받은 경우 →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 (개 7조 4의2호)
	처리조치 미흡	가명처리에 사용한 추가정보를 분리보관/삭제하지 않은 경우 → 3천만원 이하 과태료 (신 52조 3항 17호)	가명정보 처리과정에서 특정개인을 알아볼 수 있는 정보가 생성되었을 때 처리중지, 파기, 회수하지 않은 경우 → 3천만원 이하 과태료 (개 75조 2항 7의2호)
		신용정보회사등은 가명처리에 사용한 추가정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분리하여 보관하거나 삭제하지 않은 경우 → 3천만원 이하 과태료 (신 52조 3항 16호)	복원하기 위한 추가정보를 별도로 분리하여 보관 관리하는 등 해당정보가 분실·도난·유출·위조·변조 또는 훼손되지 않도록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기술적 관리적 및 물리적 조치를 하지 않은 경우 → 3천만원 이하 과태료 (개 72조 2항 6호)
영리 데이터 전문기관을 거치지 않고 정보집합물을 결합한 경우 →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 (신 50조 2항 4의2호)		가명정보 결합시 전문기관을 통해 결합하지 않은 경우 →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 (개 75조 4의2호)	
데이터 전문기관이 정보집합물을 신용정보회사 등에 제공 할 때 가명처리, 익명처리를 하지 않고 정보를 전달한 경우 → 5천만원 이하 과태료 (신 52조 2항 2의호)			

## 7. 주요 제재 규정 비교

항목	신용정보법	개인정보보호법
특정 개인을 알아보기 위한 목적의 가명정보 처리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동일 (개 28조의5 제1항, 제43조 제3호, 신 제40조의2 제2항, 50조 제2항 제7의2호)</li> <li>· 전체 매출액의 100분의 3 이하에 해당하는 금액을 과징금으로 부과 기준 동일, 다만 매출액 산정 곤란시(개인정보보호법 : 4억원 또는 자본금의 100분의 3 중 큰 금액 이하 부과, 신용정보법 : 200억원 이하) 및 매출액 자료 제출 거부 또는 허위 제출시 신용정보법은 유사 규모 회사 매출 자료에 근거해 부과 가능 (현행법과 동일) (개 제28조의6 제1항, 신 제40조의2 제6항, 제42조의2 제1항 제1의4호, 제42조의2 제2항)</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개인정보처리자가 가명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는 경우 특정 개인을 알아보기 위하여 사용될 수 있는 정보를 포함하지 않도록 함 (26조의2 1,2항) → 위반시 5년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 (기조 2호)</li> </ul>
식별된 경우 처리 중지/회수/파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가명정보를 이용하는 과정에서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있게 된 경우 즉시 그 가명정보를 회수하여 처리를 중지하고,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있게 된 정보는 즉시 삭제 (40조의2) → 위반시 3천만원 이하 과태료 (52조 3항 18호)</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가명 처리 과정에서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있는 정보가 생성된 경우에는 즉시 해당 정보의 처리를 중지하고, 지체 없이 회수/파기(8조의5 2항) → 위반시 3천만원 이하 과태료 (75조 2항 7의2호)</li> </ul>
가명정보 처리 기록 보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가명처리나 익명처리를 한 경우 조치 기록 3년간 보존, 기록 항목 명시 (40조의2 8항) → 위반시 1천만원 이하 과태료 (52조 5항 11의3호) * 익명처리시에도 기록 및 보관 의무 명시, 보관기간 3년 명시</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가명정보 처리목적, 제3자 제공시 제공받는 자 등 가명정보의 처리 내용 관리를 위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기록, 작성 및 보관 (28조의4 2항) → 위반시 1천만원 이하 과태료 (75조 4항 6의2호) * 보관 항목 시행령에 위임</li> </ul>
안전성 확보조치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가명처리에 사용한 추가정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분리하여 보관하거나 삭제해야 함 (40조의2 1항) → 위반시 3천만원 이하 과태료 (52조의2 3항 16호)</li> <li>· 가명처리한 개인신용정보에 대해 제3자 불법 접근, 입력정보 변경/훼손/파괴, 그 밖의 위험으로부터 가명정보를 보호하기 위해 내부관리계획을 수립하고 접속기록을 보관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안대책을 수립/시행해야 함 (제40조의2 제2항) → 위반시 3천만원 이하 과태료 (제52조 제3항 제17호)</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가명정보 처리시 원래의 상태로 복원하기 위한 추가 정보를 별도로 분리하여 보관·관리하는 등 해당 정보가 분실/도난/유출/위조/변조 또는 훼손되지 않도록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조치 필요 (28조의4 1항) → 안전성 확보조치를 하지 않아 개인정보를 분실/도난/유출/위조/변조 또는 훼손당한 자는 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 (73조 1호) →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한 자는 3천만원 이하 과태료 (75조 2항 6호) * 개인정보보호법에만 형사처벌 규정 존재</li> </ul>
정보집합물/가명정보 결합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신용정보회사등이 보유한 <b>정보집합물</b>과 제3자가 보유한 <b>정보집합물</b>을 결합하려는 경우 지정된 데이터 전문가를 통해야 함 (17조의2 1항) → 위반시 5년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 (50조 2항 4의2호)</li> <li>· 데이터 전문가가 결합된 <b>정보집합물</b>을 해당 신용정보회사 등 또는 그 제3자에게 전달하는 경우 가명 또는 익명처리하여 전달해야 함 (17조의2 2항) → 위반시 5천만원 이하 과태료 (52조 2항 2의2호)</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서로 다른 개인정보처리자 간 가명정보를 결합할 경우 지정된 전문가를 통해야 함 (28조의3)</li> <li>· 개인정보처리자가 결합전문기관 외부로 결합된 정보를 반출하는 경우 가명 또는 익명정보로 처리한 후 전문가 장의 승인을 받아야 함 (28조의3) → 위반시 5년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 (기조 4의2호)</li> </ul>
전송요구권 참고: Right to data portability (GDPR)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개인인 신용정보주체가 신용정보제공/이용자에게 본인에 관한 개인신용정보를 본인 또는 각 호의 자에게 전송할 것을 요구하는 경우 개인신용정보의 정확성 및 최신성이 유지될 수 있도록 정기적으로 같은 내역의 개인신용정보를 전송하여야 함 (33조의2 1, 4항) → 위반시 3천만원 이하 과태료 (52조 3항 6의2)</li> </ul>	전송요구권 관련 규정 없음
자동화 평가에 관한 이의 참고: Profiling (GDPR)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개인인 신용정보주체가 개인신용평가회사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신용정보제공/이용자에게 자동화평가를 하는지 여부 및 결과 등에 관하여 설명을 요구하는 경우 설명할 의무가 있음 (36조의2 1항) → 위반시 3천만원 이하 과태료 (52조 3항 7의2)</li> </ul>	자동화 평가에 관한 이의 관련 규정 없음



신용정보회사 등에서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정보가 유출되어 신용정보 주체가 피해를 입은 경우

신용정보회사 등은 그 손해 범위를 변경 전 3배에서 **변경 후 5배**를 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배상 (신용정보법 43조 2항 개정)

\* 개인정보보호법의 경우 <대통령령>에서 손해배상 보장금액 규정 예정

## 8. 신용정보법 개정관련 규정보기

국가법령 정보센터 원문 보기

조항	내용	
2조 정의	9인2. "본인신용정보관리업"이란 개인인 신용정보주체의 신용관리를 지원하기 위하여 신용정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식으로 통합하여 그 신용정보주체에게 제공하는 행위를 영업으로 하는 것을 말한다.	
	15. "가명처리"란 추가정보를 사용하지 아니하고는 특정개인인 신용정보주체를 알아볼 수 없도록 개인신용정보를 처리(추가정보를 분리하여 보관하는 등 특정 개인인 신용정보주체를 알아볼 수 없도록 개인신용정보를 처리한 경우를 포함)하는 것을 말한다	
	16. "가명정보"란 가명처리한 개인신용정보를 말한다	
	17. "익명처리"란 더 이상 특정 개인인 신용정보주체를 알아볼 수 없도록 개인신용정보를 처리하는 것을 말한다	
17조의2 정보집합물의 결합 등	① 신용정보회사 등은 자기가 보유한 정보집합물을 제3자가 보유한 정보집합물과 결합하려는 경우에는 데이터전문기관을 통하여 결합하여야 한다	
	② 데이터전문기관이 결합된 정보집합물을 해당 신용정보회사 등 또는 그 제3자에게 전달하는 경우에는 가명처리 또는 익명처리가 된 상태로 전달하여야 한다	
26조의4 데이터 전문기관	① 금융위원회는 제17조의2에 따른 정보집합물의 결합 및 제40조의2에 따른 익명처리의 적정성 평가를 전문적으로 수행하는 법인 또는 기관(이하 "데이터전문기관"이라 한다)을 지정할 수 있다	
	② 데이터 전문기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신용정보회사등이 보유하는 정보집합물과 제3자가 보유하는 정보집합물 간의 결합 및 전달
		2. 신용정보회사등의 익명처리에 대한 적정성 평가
3. 제1호 및 제2호와 유사한 업무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		
32조 개인신용정보의 제공활용에 대한 동의	⑥ 다음 각 호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①~⑤항을 적용하지 않는다.	9인2. 통계작성, 연구, 공익적 기록보존 등을 위하여 가명정보를 제공하는 경우. 이 경우 통계작성에는 시장조사 등 상업적 목적의 통계작성을 포함하며, 연구에는 산업적 연구를 포함한다.
		9인3. 제17조의2제1항에 따른 정보집합물의 결합 목적으로 데이터전문기관에게 개인신용정보를 제공하는 경우
33조의2 개인신용정보의 전송요구	① 신용정보주체는 신용정보제공/이용자등에 대하여 그가 보유하고 있는 본인에 관한 개인신용정보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전송하여 줄 것을 요구할 수 있다	1. 해당 신용정보주체 본인 2. 본인신용정보관리회사 3.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신용정보제공/이용자 4. 개인신용평가회사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한 자
	② 제1항에 따라 개인인 신용정보주체가 전송을 요구할 수 있는 본인에 관한 개인신용정보의 범위는 다음 각 호의 요소를 모두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 해당 신용정보주체와 신용정보제공·이용자등 사이에서 처리된 신용정보 2.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로 처리된 신용정보일 것 3. 신용정보제공·이용자등이 개인신용정보를 기초로 별도로 생성하거나 가공한 신용정보가 아닐 것
	③ 제1항에 따라 본인으로부터 개인신용정보의 전송요구를 받은 신용정보제공/이용자등은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률의 관련 규정에도 불구하고 지체 없이 본인에 관한 개인신용정보를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로 처리가 가능한 형태로 전송하여야 한다	1.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4조 2. 「국세기본법」 제81조의13 3. 「지방세기본법」 제86조 4. 「개인정보 보호법」 제18조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률의 관련 규정
	④ 제1항에 따라 신용정보주체 본인이 개인신용정보의 전송을 요구하는 경우 신용정보제공/이용자등에 대하여 해당 개인신용정보의 정확성 및 최신성이 유지될 수 있도록 정기적으로 같은 내역의 개인신용정보를 전송하여 줄 것을 요구할 수 있다	

조항	내용	
36조의2 자동화평가 결과에 대한 설명 및 이의제기 등	<p>① 개인인 신용정보주체는 개인신용평가회사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신용정보제공/이용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설명하여 줄 것을 요구할 수 있다.</p>	<p>1. 다음 각 목의 행위에 자동화평가를 하는지 여부 가. 개인신용평가 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거래의 설정 및 유지 여부, 내용의 결정 다.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p> <p>2. 자동화평가를 하는 경우 다음 각 목의 사항 가. 자동화평가의 결과 나. 자동화평가의 주요 기준 다. 자동화평가에 이용된 기초정보 라.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p>
40조의2 가명처리/ 익명처리에 관한 행위규칙	<p>① 신용정보회사등은 가명처리에 사용한 추가정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분리하여 보관하거나 삭제하여야 한다.</p> <p>② 신용정보회사등은 가명처리한 개인신용정보에 대하여 제3자의 불법적인 접근, 입력된 정보의 변경·훼손 및 파괴, 그 밖의 위험으로부터 가명정보를 보호하기 위하여 내부관리계획을 수립하고 접속기록을 보관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술적·물리적·관리적 보안대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p> <p>③ 신용정보회사등은 개인신용정보에 대한 익명처리가 적정하게 이루어졌는지 여부에 대하여 금융위원회에 그 심사를 요청할 수 있다</p> <p>④ 금융위원회가 제3항의 요청에 따라 심사하여 적정하게 익명처리가 이루어졌다고 인정한 경우 더 이상 해당 개인인 신용정보주체를 알아볼 수 없는 정보로 추정한다.</p> <p>⑥ 신용정보회사등은 영리 또는 부정한 목적으로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있게 가명정보를 처리하여서는 아니 된다.</p> <p>⑦ 신용정보회사등은 가명정보를 이용하는 과정에서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있게 된 경우 즉시 그 가명정보를 회수하여 처리를 중지하고,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있게 된 정보는 즉시 삭제하여야 한다.</p> <p>⑧ 신용정보회사등은 개인신용정보를 가명처리나 익명처리를 한 경우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조치 기록을 3년간 보존하여야 한다</p> <p>1. 개인신용정보를 가명처리한 경우 가. 가명처리한 날짜    나. 가명처리한 정보의 항목    다. 가명처리한 사유와 근거</p> <p>2. 개인신용정보를 익명처리한 경우 가. 익명처리한 날짜    나. 익명처리한 정보의 항목    다. 익명처리한 사유와 근거</p>	